

인권정보자료실  
NGOI.18

# 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제 2 회 전국 인권 활동 가 대 회

- 연제 ○ 2003년 10월 24일(금) 부터 26일(일)까지
- 어디서 ○ 경기도 용인 등지골 수련원
- 주최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hmet.jinbo.net/forum)

국제민주연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디름으로 닮은 여성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  
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  
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등권연대,  
전북 평화의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인권정보자료실  
NGOI.18

# 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언제** ○ 2003년 10월 24일(금) 부터 26일(일)까지

**어디서** ○ 경기도 용인 동지골 수련원

**주최**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hrnet.jinbo.net/forum](http://hrnet.jinbo.net/forum))

국제민주연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음으로 님은 여성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  
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  
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 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전체일정

### □ 10월 24일(금) 첫째날

2:00~ 3:00 참가자 등록

3:00~ 4:00 여는 마당 (진행 : 인권교육네트워크)

4:00~ 6:00 연대마당 1부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 1부 좌담주제

- '국가보안법폐지'와 '국가인권위'의 현황과 과제
- 과거청산운동 및 사회보호법폐지운동등의 현황과 과제

○ 사회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패널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이창수(새사회연대), 이춘열(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6:00~ 7:00 저녁식사

7:00~10:00 연대마당 2부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 2부 좌담주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 소수자운동의 현황과 차이의 권리들  
(성소수자인권운동, 장애인인권운동, 여성운동)
-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전 (평화권, 정보인권, 불안해폐기장 투쟁)

○ 사회: 손상열(평화인권연대)

- 패널 : 타리(다름으로 닮은 연대), 이평(한국동성애자연합),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주봉희(KBS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10:00~12:00 교류의 시간(식당)

□ 10월 25일(토) 둘째날

- 8:00~ 9:00 아침식사
- 9:00~12:00 토론마당(주제별 워크샵)
- ① 인권·과거청산·공소시효 주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 ②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주최: 다름으로 닮은 연대
  - ③ 동성애바로알기 주최: 한국동성애자연합
  - ④ 차별과 인권 주최: 국가인권위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워크샵팀
  - ⑤ 반세계화와 인권 주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 12:00~12:30 토론마당 전체공유 (사회: 다담연대, 한동연)
- 12:30~ 2:00 점심식사
- 2:00~ 5:00 공동체 놀이(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진행)
- 5:00~ 7:00 저녁식사
- 7:00~10:00 토론마당(주제별 워크샵)
- ① 장애인이동권과 인권 주최: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② 치료감호와 인권 주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③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주최: 새사회연대
  - ④ 평화와 인권 주최: 평화권 모임
  - ⑤ 군대와 인권 주최: 군가협
  - ⑥ 정보인권 주최: 진보네트워크 센터
  - ⑦ 인권교육의 어제,오늘, 내일 주최: 인권교육네트워크
- 10:00~11:00 토론마당 전체공유 (사회: 김도경, 장애인이동권연대)
- 11:00~ 교류의 시간(식당)

□ 10월 25일(일) 셋째날

- 9:00~12:00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정리마당 "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한 제안과 토론"  
사회: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차례

□ 연대마당 : 각 의제별 경과와 평가문

- 2/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운동 : 국가보안법폐지를 중심으로
- 5/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 13/ 2003년 과거청산과 인권운동
- 15/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17/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는가?
- 20/ 풍각지의 나라 :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위하여
- 23/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 투쟁 평가
- 26/ 부안 핵폐기장 투쟁 경과
- 30/ 평화권 운동

□ 토론마당 : 주제별 워크샵 발제문

<인권·과거청산·공소시효>

- 34/ 민간인 학살문제와 국가적 책무

<장애여성의 인권>

- 4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 역할극 워크샵에 대한 소개

<동성애바로알기>

- 43/ 동성애 바로알기

<차별,인권, 차별금지법>

- 47/ 차별과 인권

<반세계화와 인권운동>

- 52/ 반세계화운동의 다양한 전략과 쟁점
- 65/ 반세계화운동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위치- 평가와 전망

- 73/ 별첨자료 : 경제자유구역과 인권운동
- 78/ 별첨자료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이후 인권운동의 과제
- 82/ 별첨자료 : 해외 한국기업감시
- 86/ 반세계화운동으로서 글리백 투쟁의 성과와 한계

<치료감호와 인권>

- 96/ 사회보호법과 격리, 수용, 감금의 역사

<평화와 인권>

- 108/ 평화의 권리를 생각하는 이유
- 110/ 별첨자료 : 전쟁세거부와 평화세계정운동 - 소개와 검토
- 116/ 여성주의가 비판하는 안보론
- 118/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반전운동의 방향

<군대와 인권>

- 124/ 군의문사 현황 및 제언

<정보인권>

- 135/ 정보화와 정보인권
- 143/ 지적재산권의 개념
- 146/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 149/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153/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독점
- 156/ 카피레프트운동과 대안만들기

<인권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58/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 한국인권교육의 시작과 과제
- 164/ 학교와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 172/ 2003년 국가인권위 활동평가와 인권운동의 대응 - 워크샵 소개글

<장애인이동권과 인권> 173

# 연대마당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첫째날

4:00~ 6:00 연대마당 1부

- 1부 좌담주제
  - '국가보안법폐지'와 '국가인권위'의 현황과 과제
  - 과거청산운동 및 사회보호법폐지운동등의 현황과 과제
- 사회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 패널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이창수(새사회연대), 이춘열(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7:00~10:00 연대마당 2부

- 2부 좌담주제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 소수자운동의 현황과 차이의 권리들 (성소수자인권운동, 장애인인권운동, 여성운동)
  -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전 (평화권, 정보인권, 불안해제기장 투쟁)
- 사회: 손상열(평화인권연대)
- 패널 : 타리(다름으로 닮은 연대), 이평(한국동성애자연합), 장여경(진보네트워킹센터),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주봉희(KBS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운동

##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

박래군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

민가협이 10월 2일자 통계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총 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구속되었던 126명과 비교하면 약간 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검찰의 이전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처리 지침 등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선 구속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 한총련 11기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의한 구속 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외로 많은 수가 구속되었다. 민가협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구속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공안부서가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사건 수배자들-한총련 대의원 등을 검거하였기 때문이다.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로 공안부서가 힘을 얻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더 많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 ○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평가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경우 피해자들이 분산적으로 대응한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시 민모임(아래 국폐모)이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한 것, 민가협의 목요집회 등 단체들의 활동 정도를 들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진보의련 사건 1심 판결을 계기로 대책위가 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으며, 건국대생 2명의 구속에 따른 대책위 활동 등이 있다. 피해자들은 나름대로 이들 사건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민가협과 국폐모의 활동은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운동의 전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올해 가장 크게 주목되었던 활동은 한총련 수배해제 투쟁이었다. 한총련 수배자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엄호가 결합되었던 이 투쟁은 법무부의 이전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이끌어내는 한편,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이적규

정 적용 수배 방침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 투쟁의 성과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제한하는 것을 강제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 투쟁의 성과가 곧바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상승되지는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상황은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매카시 선풍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폐지된 사상 전향제와 준법서약제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만들었으며, 수구세력과 공안세력이 이 사건 처리에서 '노동당 입당' 문제로 충격을 받고 해매는 진보진영의 혼란을 누르고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만이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였지만, 상황에 대한 개입력은 매우 떨어졌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중심이 되고 운동을 선도해야 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그 조직력과 실행력이 고갈되어 겨우 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몇 단체만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에 대한 입장도 내지 못하였고, 폐지운동으로 소속단체들을 추동하지 못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 팀을 견인하여 피해자 청문회를 성사시켜 국가보안법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이 사업도 국가인권위 태스크포스 팀이 내년 총선 이후로 공청회와 청문회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힘에 의한 운동을 조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올해 전반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1998~9년의 국가보안법 개정 국면에서 패배한 이후 급격히 침체된 운동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예견되었다. 대체로 현재의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전제 아래 주체들이 투쟁과제들을 미루어둔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미미하게 진행된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운동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문제를 넘는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의미까지 폭로하고 공격하는 운동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 ○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 '반테러'1)

2003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다시 나섰다. 월드컵 안전을 명분으로 한 2001년~2002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시도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반대 의견 표명 등에 무산된 바 있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은 법안이 과거부터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연장선 상에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새롭게 설치되는 대테러센터가 다른 기관들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월간 <네트위커> 2003년 11월호에 실릴 글을 자료로 실었습니다.

국정원은 어떤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정보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비밀주의로 인해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한 그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애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같은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곧 기본적인 권리의 제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직접적인 인권침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동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 감시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올해 수정안을 마련, 다시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고치고, 벌칙 조항을 없애는 등 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국정원이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국정원의 권한 강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안이 이래저래 수정된다 해도 본질 상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테러방지법에 목매는 국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선 전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테러리즘'이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9·11을 계기로 '테러'는 공공의 적, 국가안보의 적으로 전면에 부상했다. 냉전 시대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적이 '공산주의'였고 그것이 국민 통제, 국가권력 강화의 근거로 이용됐다면,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 공안기관들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테러에 대한 공포를 한층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했다. 9·11 이후 대테러 활동이란 이름 하에 내·외국인의 통신에 대한 감시, 형사소추기관의 수색·압수권한의 강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약화, 자의적 체포·구금,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강화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각 국에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강화된 국가보안법, 반테러법은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다른 나라들처럼 '테러와의 전쟁'이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미 이 땅에선 국가보안법 하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유린하는 야만이 50년 넘게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들에서 새롭게 제정된 반테러법의 '대선배' 격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색깔몰이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먹히지 않는 현실의 변화 속에서, 국정원은 '테러와의 전쟁'을 자기 조직의 보존 및 강화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반공주의'와 냉전적 질서의 요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 마당에 우리들은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2001년~2002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활동 속에서 '반테러'라는 것이 기존의 '반공주의'와 더불어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한 축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이창수 (새사회연대)

### ○ 취지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투쟁을 전개해 지난 2001년 4월 30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권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나라 인권문제에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영역과의 상당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간영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민간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임에 틀림없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반대로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라는 대립적인 지위를 함께 검토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인권분야의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감시대상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운동 영역의 전략적인 관계 정립과 그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된다.

### ○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인권운동단체의 활동 경과

<2001 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출범

<2002 년>

11월

- 25일 제21차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
- 28일 제23차 상임위원회
-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권고  
홈페이지 게시판 비실명제 재전환

12월

- 2일 베트남 국립인권연구소장 일행 방문
- 6일 제22차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
- 9일 제30차 전원위원회  
중국동포 강제퇴거 진정사건 결정
-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11일 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
- 12일 중국동포 보호일시해제 권고 발표
-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삭제 및 개정 권고 발표
- 13일(?) 정강자 위원등 아시아시민사회포럼 참가
- 16일 인권논문공모사업 수상자 및 수상논문 발표  
국가인권위원 류국현 임명
- 18일 회의록 비공개 청구소송 답변서 제출
- 23일 제31차 전원위원회  
제23차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 결정  
중국동포 강제퇴거에 따른 진정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전입공고
- 24일 계호근무준칙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삭제 권고 발표
- 27일 제24차 상임위원회

<2003 년>

1월

- 3일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 7일 주요기업 입사지원서 채용차별 분석자료 발표

8일 제25차 상임위원회

10일 제24차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  
류국현 인권위원 사임

11일~18일 박경서 위원등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참석

13일 제32차 전원위원회

병원에 대한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 결정  
인천공항 인격권 침해사건 합의권고 발표  
중국동포 입국금지 해제 권고

14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20일 제25차 정책및대의협력소위원회

제37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21일 전 만덕복음병원장 등 2명 검찰총장 고발 및 인권침해방지대책 마련 권고 발표  
이화여대, '금혼 조항' 개정 결정 환영발표

22일 제30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24일 회의록비공개 청구소송 1차 <준비서면> 제출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결정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 발표  
태국 상원 사법 및 인권위원회 위원장 일행 방문

28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새정부 추진 10대 인권현안 과제 발표

법무부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불허에 대한 유감 표명 발표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발간

29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임용 차별 사건 권고 발표  
소위원회 명칭변경 및 소관업무 변경 발표

2월

3일 제26차 제1소위원회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발간

4일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대표, 주한 영국대사관 관계자 방문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5일 제27차 제1소위원회

교사 인권의식 실태조사결과 발표  
차별금지 관련 법령 번역 및 감수 수의 계약 공고

6일 노인인권 기획조사결과 발표

8일 군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



- 10일 제34차 전원위원회  
제28차 제1소위원회  
시설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결정  
시설 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결정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정책 권고 발표  
공무원 채용 및 전입공고
- 11일 업무설명회 개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 12일 미국노총 소속 아시아태평양 노동동맹 관계자 및 국제이주기구 아태지역 자문관 방문  
조선일보 보도반박 및 장애인 학습권 침해 실태내용 자료 공개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제6조 제3항 삭제, 완화 권고 발표
- 13일 B형간염 보균자 고용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 14일 목표교도소에 화장실 칸막이설치 및 시설보완 권고 발표
- 15일 제26차 상임위원회
- 17일 민간보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중증장애인 불구속수사 긴급구제조치 권고 발표
- 18일 유치장 입감시 안경착용 개선안 마련 및 인권교육 권고 발표
- 19일 인천 남동구청 인사권남용 건 합의 권고 발표
- 20일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 청문회 개최  
청송제2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책임자 징계 권고 발표
- 21일 영창관리규정 개정, 삭제 및 인권교육실시 합의 권고 발표
- 24일 제35차 전원위원회  
제29차 제1소위원회  
제39차 제2소위원회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  
유치장내 흡연권 보장 결정
-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인권정책국장 채용 공고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홍보검사등 9명 검찰 고발 및 수사외,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 발표
- 26일 차별금지법 국민제안창구 설치 발표  
군 의문사사건 실지조사 착수 발표  
연간 보고서 발간(인쇄) 공개 수의 계약 공고
- 27일 2003년 인권시민단체 협력사업 공모  
2003년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 28일 기능직(사무원)공무원 특별채용 공고

- 유치장흡연권 제한 기각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창간호 발간
- 3월
- 3일 제40차 제2소위원회
- 4일 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장 일행 방문
- 7일 경주경찰서 유치장 업무 관련자 인권교육 권고 발표
- 10일 제36차 전원위원회  
제30차 제1소위원회  
제41차 제2소위원회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결정  
국적차별 결정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결정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 발표
- 11일 인권종합정보시스템 1차 우선 개통  
호주제 위헌, 인권침해 제도 의견서 제출결정 발표
-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회의참가자 방문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특별법 제정 권고 발표
- 14일 인천구치소 의무관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 15일 국가인권위 '회의록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준비서면> 제출
- 17일~4월25일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참가 및 모니터링  
직업재활훈련대상자 선정제도 개선 권고 발표
- 18일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일 2003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공고
- 21일 2003년도 제2회 전문상담원 모집공고  
제42차 제2소위원회
- 24일 제37차 전원위원회 회의 모니터  
제31차 제1소위 회의 모니터  
기간제교원 고용 차별 결정
- 25일 국가인권위, 3차 <준비서면> 제출  
기간제 교원 보수, 퇴직금, 연가허용 등 차별시정 권고 발표  
이라크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직원 성명 발표
- 26일 제38차 전원위원회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발표
- 27일 인권동화 출판 공모  
울산중부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검찰총장에 수사외 결정 발표

28일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 개방형 인권정책국장 전보임용 발표

31일 제43차 제2소위원회  
송파경찰서 수사관 인권교육 권고 발표

4월

1일 종로경찰서장 등 인권교육 권고 발표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기준 중 '동성애' 삭제 권고 발표

3일 '성범죄수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 위반 경찰에 인권교육 권고 발표

7일 제44차 제2소위원회  
연간보고서 발간 발표

8일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청문회 개최

9일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개최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개정 권고 발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채용공고  
아동, 노인 인권동화 및 인권동화 활용매뉴얼 발간 배포 발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위반 경찰관 인권교육 권고 발표

14일 국회 업무보고  
제32차 제1소위원회  
제39차 전원위 회의 모니터

16일 행자부, 제16회 특별채용(제한경쟁) 시험계획 공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찰청에 의견표명 발표

17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노동부 의견표명 발표

21일 제45차 제2소위원회

22일 2003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심사결과 공고

24일 이모 이병 자살관련 가혹행위 혐의자 수사의뢰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권고발표

25일 「2003년도 협력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무료법률상담 안내 발표  
법의 날 기념사 발표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 위반한 교도관에 인권교육 권고 발표

25일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 선정 발표

28일 제 27차 상임위원회  
제33차 제1소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  
제16회 특별채용(제한경쟁) 시험계획 재공고

29일 2003년도 시민실천 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선정결과 공고  
황태연 교수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

5월

1일 이홍록(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임명(대통령 지명)

2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의견표명 발표  
지역인권순회상담 및 홍보 활동 발표

6일 부산지역 인권상담센터 운영 및 시민단체 간담회, 인권강연 개최 발표

7일 제40차 제3소위원회  
제46차 제2소위원회

6월

2일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 유찰 결과발표

2일 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재공고  
2003인권논문 공고

12일 공무원 채용공고  
2003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사업공고 유찰결과 발표

18일 2003년 인권 애니메이션 제작 입찰 공고  
인권교육발전5개년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심사결과 발표

25일 초중고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과제 심사결과 발표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공모

27일 2003년 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 모집 공고  
2003년 제2차 인권관련 문헌번역 공고

8월

1일 김만흠 인권위원 임명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국회 지명)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첫 국정감사 실시

23일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 평가와 향후 계획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차차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이 그 만큼 유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등 인권운동단체들은 류국현 위원의 사퇴를 유도 등 일부 활동

이 있었지만 단체내의 다양한 의견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해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박노현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지만 이를 계기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민간 영역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이라크 전쟁반대 권고 채택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게되고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국회 주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민간운동 영역이 약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 그리고 인권기준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본연의 위상을 잡는데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인권운동계는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받는다.

## 2003년 과거청산과 인권운동

### ○ 취지

과거청산운동은 인권운동에서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의문사 문제, 삼청교육대 문제 및 군관련 의문사들의 문제들은 사실상 국가가 국가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다른 인권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구조적인 맥락을 갖고 있어 이 영역에서 인권운동의 지평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과거청산 관련 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많이 벌여 왔다.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고 관련 단체들의 연대활동 가능성과 인권운동계의 협력적·연대적인 활로를 찾아 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 활동경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 4.19 직후 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압살됨
- 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거창, 제주 등지에서 학살규명운동이 다시 시작됨
- 90년대 들어 10여 곳에서 지역 차원의 학살규명운동이 시작되고, 거창 특별법과 4.3특별법이 제정됨
- 2000년 9월 민간인학살규명 범국민위 결성 -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으로 학살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전국통합특별법 제정운동에 착수함
- 2001년 9월 6일 통합특별법 국회 발의 (김원웅 의원 외 46인)
- 2002년까지 전국 100여 곳에서 집단학살 주장 제기됨
- 2003년 2월 27일부터 114일간, 전국 유족 및 관련사회단체의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 (4월 1일부터 여의도 노숙 농성 80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산하에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를 두고 농성을 지휘
- 전국 유족,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 각계각층의 지지성명, 법제정 촉구 성명
- 농성 현장 해원굿, 각지의 위령제
- 학살관련 각종 토론회 및 증언대회 개최
- 결의대회, 투쟁대회
- 학살지 조사 - 전주형무소, 김천형무소 학살 공론화
- 장관, 국회의원, 관계기관 면담, 항의방문
- 언론 보도, 언론 출연
- 2003년 6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병석 의원의 합의파기로 통합법 무산
- 2003년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 이후 지역별로 위령제 진행하며 재정비중
- 학살 데이터베이스와 학살지도 CD 제작, 학살실태조사 진행중 (10월 16일, 정부 4.3 보고서 채택)

#### ○ 향후 계획

1. 통합특별법 제정사업: 현재 동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나 줄기차게 시도할 예정
2. 실태조사 사업: 제보가 들어오는 곳 중심으로 기초 조사. 지역별 조사는 계속 진행중
3. 학살 데이터베이스 및 학살지도 제작: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
4. 홍보: 민간인학살 대중책자 발간, 홈페이지 활성화
5. 연구 작업: 연구자 중심으로 추진중
6. 위령사업: 지역별로 추진중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

#### ○ 개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삼청교육대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은 지난 23년간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사례들과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속에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있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 500여명이 12일간 '사회보호법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성명서를 내며 공동 대응을 시작하였다. 2003년 3월 2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후 사회보호법 관련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였고, 두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십여차례의 청송 현장 조사활동, 세차례의 공개 워크숍, 지회 및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 ○ 평가와 계획

사회공론화 작업으로 언론들과 손잡고 방송 및 신문에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했었고,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을 열어 많은 반향을 불러왔다. 그동안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공대위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177인 선언', '활동가 517인 선언' 등을 진행하였고, 특히 대한변협,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등의 폐지 권고를 이끌어 내며, 십수명의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냈다. 지난 9월 서상섭의원의 발의로 폐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회보호법 폐지법안'과 공대위의 논의 결과물인 '심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치료보호 법안'을 10월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 전망

지난 10월 4일 단식농성 중에 있던 감호자 1인이 맹장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 다시 국회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법사위 의원들은

이미 폐지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한나라당 역시 법사위 소속인 최연희, 원희룡 의원 등이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주영의원이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당 상임운영위에서 당론으로 하자는 결정을 하였고, 얼마전 제1정조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11월 초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감호자들이 꾸준히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대위 역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계속 추동하며, 국회에서의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11월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이다.

## 방송사 비정규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는가?

주봉희(방송사 비정규노동조합 위원장)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하면 대부분 기자, 피디를 연상하고 화려한 의상과 잘 차려진 무대를 떠올린다. 이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지성인으로 생각하며 아무 거부감 없이 그들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함 뒤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과 탄압이 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방송사에서 저임금속에서도 생활해야만 하는 15000여명 방송사 비정규노동자들의 아픔이다. 공영방송은 공영을 자처하며 눈을 가리고 착취하고, 상업방송은 상업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인양 비정규노동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린다.

이 땅의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변자가 되고 감시하여야 할 방송사가 오히려 맨 앞에 서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국가기간방송이라고 자처하는 KBS, MBC 그리고 양심있는 꿈나무 방송이라고 자처하는 교육방송 EBS 등 전국에 걸쳐 있는 민영방송사들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등에 업고 착취와 탄압,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방송사 중에 가장 조직적이고 비윤리적으로 탄압하는 KBS부터 살펴보자.

KBS는 8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 정권시절을 울타리로 생각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소·경비·세차·카메라보조·운전·음향·조명 등 힘없는 밑바닥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커피심부름이 당연시되었고 온갖 잔심부름이 그들 일이었다. 필자는 차량부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차량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바라며 착잡한 심정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방송사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90년 초부터인가 기억된다. 그때 당시 받은 첫 월급이 63만원이었다. 우리 나라 첫 민영방송인 SBS에서 시작된 방송걸음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고, 95년 KBS로 옮기고 부터는 세상을 산다는 게 새삼 캄캄하게 느껴졌다. '어이' 라는 정규직이 반말로 부르는 호칭에서 시작된 KBS 차량부운전기사는 생활은 노동이 주는 가치있는 웃음보다는 분노와 눈물이 더 많은 나날로 기억된다.

이중착취가 무엇인지도, 파견회사가 월급의 절반을 떼어가도 항변 한번 못하였고 업무중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청구는 꿈꿀 수 없었다. 월차휴가·연차휴가·정기휴가 또한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 뿐이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은 정규직노동자들의 달콤한 노래로만 생각했고, 근로기준법은 우리에게겐 사치 그 자체였다. 몸이 아파 하루를 쉬게 되면 월차를 주는 게 아니라, 33,000원을 급여에서 깎아버린다. 하루, 이를 연속해서 출근을 못하면 방송사에서는 아예 파견회사에 연락해서 교체를 요구한다. 하루 일당 23,000원, 결근하면 하루 일당보다 일만원 더 많은 33,000원을 깎아버리기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이 와도 이를 악물고 출근을 한다.

당시 KBS에는 180여명의 정규직 차량운전기사가 전국에 있었고, 서울본사에는 80여명 있었다. 비정규운전기사는 53명이 함께 근무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보도취재, 드라마교양제작, 스포츠 등으로 정규직 차량운전기사와 똑같이 전국을 운전하며 다닌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이나, 복수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항상 우리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사실은 일년 내내 시베리아 별판 만큼이나 추웠고, 긴장감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배차실에 보고해야 하고 회사 내에 있는 은행에 갈 때도 보고를 한다. 차량 배차시 마이크로 호출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그날 우리는 종치는 날이다. '야 새끼'는 보통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규직들한테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는 놈'으로 분류된다. 분류란... 어떤 의미일까? 상상에 맡기자.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편에서 옹호해주고 대변하는 정규직들이 다수이긴 하였지만, 그들 역시 우리들 때문에 같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일수였다. 우리들을 호칭할 때 '어어' '야야'가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야! 렌트카' 아님 '야! 용역' 하고 부른다. 정규직과 함께 출장을 가다가 정규직 차량을 추월하면, 욕을 얻어먹고 망신을 당한다. '감히 용역새끼가 정규직 차량을 추월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항상 우린 시다발이고, 아래 것들로 분류시킨지 오래이다. 대기실 또한 차별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개인책상 및 사물함, 대형TV가 2대이고 온난방 시설이 완벽하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여름은 찜통이고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물값 내고 직장 생활하는 곳은 아마도 KBS 말고 또 있을까?

우리가 생활하던 대기실 고작 16인치 흑백텔레비전이 전부다. 우스개 소리 하나하자. 96년 인가 박찬호가 출전하는 야구경기 생중계가 있는 날이었다. 우리 동료 중에 열성야구팬이 있었는데 하도 궁금해서 살그머니 정규직 대기실에 가서 보다가 광고시간에 들켰단다. '야! 이

새끼야 너네 방에 가서 봐, 왜 여기 와서 보고 지랄이야 우리들의 방은 유선연결이 안되어서 다른 채널은 볼 수도 없다. 어쩌다 MBC 뉴스 보면 정규직들이 '야! MBC가 좋으면 그리로 가'라고 고함을 친다.

어느 날 70이 넘는 노인할아버지가 결근자 대신 나왔다가, 마침 우리방에 물이 떨어져서 정규직방에 가서 약을 복용할 물을 한 컵 떠드시다가 정규직한테 '여봐, 당신방에는 물 없어? 왜 여기 와서 물먹고 지랄이야' 그 소리에 우리방에 오셔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실 때, 그저 우린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위로조차 못해드린 게 아직 마음에 걸린다. 응어려져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들, 방송사 비정규파견노동자들은 지금도 매달 2,000원씩의 물값을 들고 출근한다. 2년이 되면 빈 물통을 바라보며, 쓸쓸히 다음 정거장을 향해 쓰러질 듯한 고통과 함께 파견법을 원망한다. 축축하게 젖어오는 눈길조차 외면하고 떠나간다. 죄지는 노동자인양 착취만 당하다가. 훌훌, 미련을 뒤로 한 채, 총총히...

# 콩깍지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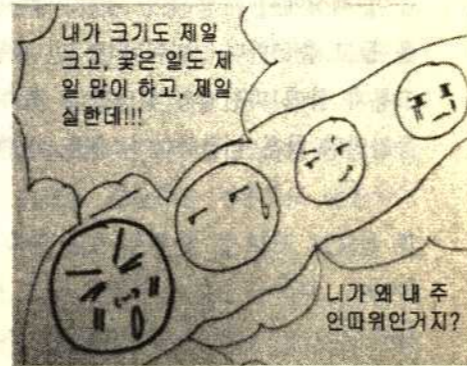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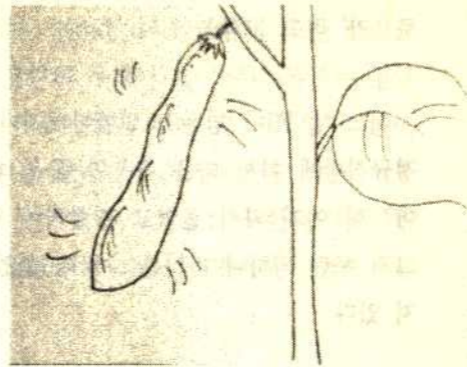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위하여

by OZ (in WAW)

- # 콩깍지 : 가족
- # XY 완두콩 : 남자
- # XX 완두콩 : 여자

-> 사족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_ \_ );

XY 완두콩 콩깍지 주인제도'



다행히 'XY 완두콩 콩깍지 주인 제도'는 폐지되었다.

# 콩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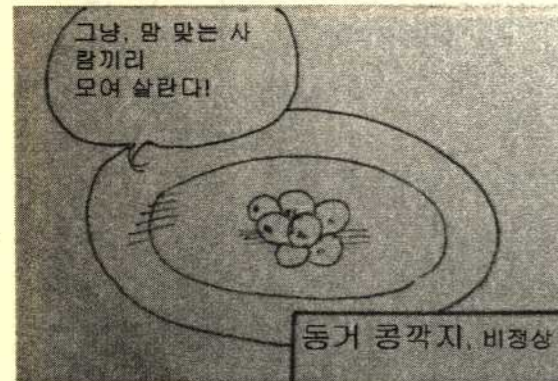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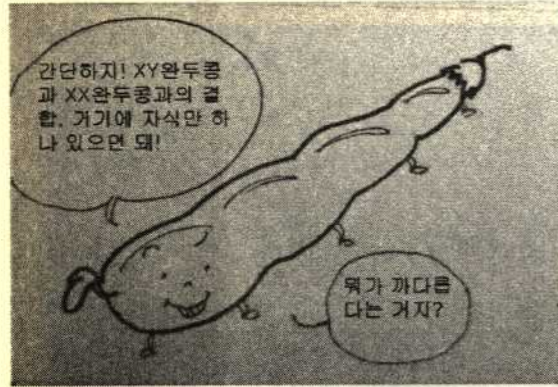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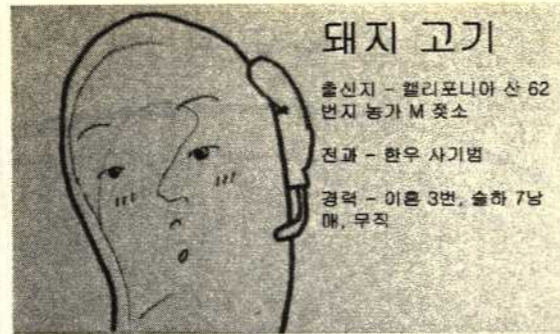


'XY...' 제도가 폐지됐어도 '콩깍지별 신분제'가 남았다.

정상 콩깍지 이데올로기



동성 콩깍지, 비정상



# 전교조의 NEIS 반대투쟁 평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 NEIS 투쟁의 성과

아직 NEIS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얻었다.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첫째, 언론을 통해 '정보인권' 담론이 확산되었다. NEIS 투쟁이 언론에 의해 교육계내 갈등으로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NEIS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진보넷-한겨레 공동기획 '전자정부, 인권과 함께가자' 등) 적어도 정보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쟁점화는 되었다고 본다. '정보인권' 담론은 NEIS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 반대활동, 인터넷 실명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빅브라더 주간 그리고 최근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 발표한 작업장 내 감시 시스템 실태 조사와 맞물리며 쟁점을 확대시키고 있다.

둘째, 운동 진영내 '정보인권' 의식의 확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민사회운동 진영 역시 '정보화'를 '전산화'로 이해하거나, 기술의 '활용'문제에 중점을 두었을 뿐,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이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NEIS 투쟁, 특히 인권 활동가들의 단식 농성은 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정보인권 문제를 쟁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교조 내에서도 NEIS 투쟁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 내 정보인권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NEIS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인터넷 전자투표 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성과는 NEIS 문제를 넘어 '전자정부' 사업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NEIS에서 문제가 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다른 전자정부 사업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정부 내에 확산시켰다.



그 결과 올해 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과 기구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하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의)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하며, 따라서 NEIS 반대 투쟁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기구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 ○ NEIS 투쟁 과정의 한계

2003년 2월, 전교조와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EIS 반대 연석회의'가 구성되었다. 상반기 NEIS 투쟁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이었지만, 주된 동력은 전교조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전교조가 대중조직으로서 대중 동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쟁 방식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즉,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 토론회, 로비, 법적 대응, 언론 작업 등의 활동에 치우친 반면,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교조는 인권위 농성, 청와대 앞 단식농성, 연가 투쟁 등 NEIS 문제를 몸으로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교조의 투쟁으로 NEIS가 처음의 안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전교조 중심의 투쟁은 NEIS 문제를 교육계 내 갈등으로 왜곡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물론,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문제나 교육계 내 보수·진보간 긴장 관계가 근본적인 이유 이겠지만, 이와 같은 NEIS 쟁점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때늦은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중조직인 전교조가 NEIS 투쟁의 주축이라는 점은 NEIS 투쟁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곡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EIS 반대의 이유는 학생과 교사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외에도 교사들의 업무 증가나 교원 통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정보인권' 수호라는 공동의 구호를 내 걸고 있지만 투쟁의 주요 이유는 각 조직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투쟁 과정 속에서 정보인권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깊어지기는 했지만, 전교조도 초기에는 교사의 업무증가와 통제의 문제로부터 접근했었고, 또한 전교조 내 조합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도 여전히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부분을 해결할 타협책이 나온다면 투쟁의 동력이 많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중조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종종 겪게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대 단체들간의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

해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NEIS 연석 회의 초기에 이러한 소통의 미비로 약간의 긴장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NEIS 일단 중지 후 교육정보화사업 재검토'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전교조의 경우 '5개 영역 분리·폐기'의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조율 없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대언론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기 전 즈음, NEIS 연석회의에서의 논의 없이, 'NEIS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전교조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교조의 독단적 행동은 때로는 연대 단체들을 당황스럽게 한 것이 사실이며, 몇몇 단체는 전교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 단체들 간의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 ○ NEIS 투쟁의 향후 방향

하반기 NEIS 투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최소 목표가 '3개 개인정보 영역 삭제'라는 것에는 NEIS 반대 공대위에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간 전교조가 구호로 내걸었던 '인권위 권고안 수용'과의 미묘한 차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권위 권고안 수용은 3개 개인정보 영역 삭제를 포함하는 요구이지만, 학내 정보수집의 범위 및 관리 방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C/S 이용 및 C/S 보안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NEIS 투쟁 과정을 통해서 C/S나 NEIS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필요성으로 수집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부터, 수집된 정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하는 문제까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대 목표는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학내 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그간 교육정보화 사업의 재검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소 목표에 대한 미묘한 차이에 대한 토론과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 NEIS 투쟁은 전자정부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하반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및 기구(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립'이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참여연대, 민변,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넷 등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연석회의가 구성이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관련 투쟁도 NEIS 문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및 기구를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것은 NEIS 투쟁의 또 다른 성과이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NEIS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안핵폐기장 투쟁 경과<sup>1)</sup>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월 4일 산업자원부 경북 울진,영덕,전북 고창,전남 영광 4개 지역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 2월 19일 고창 핵폐기장 반대 범대위 발족
- 2월 28일 전북도지사실에서 고창군 핵대위 강도지사에게 반대여론
- 3월 13일 핵폐기물 거부 조례 돌입
- 4월 1일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출범
- 4월 3일 고창 핵폐기장 유치반대 결의문 전북도의회 만장일치 채택
- 4월 15일 핵 폐기장 선정사업을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 발표
- 5월 6일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움직임
- 5월 30일 핵시설유치 지역발전과 연계하지 마라 전북대 민교협 성명서 발표
- 6월 2일 전라북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추진 지원단' 현판식
- 6월 15일 군산, 산자부 장관과 지역시민단체 대표자들의 긴급 간담회
- 6월 16일 군산시, 방폐장 안정성 검토 전담반 구성
- 6월 23일 군산시민단체, 핵폐기장 반대 성명 발표
- 7월 4일 핵폐기장 유치반대 김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 7월 7일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 군산대책위 발족
- 7월 9일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결의대회
- 7월 10일 군산 강근호 시장, 핵폐기장 유치 포기 공식 선언
- 7월 11일 김군수,핵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신청 기자회견  
부안군의회 유치 반대 결의
- 7월 14일 유치신청서 산업자원부에 접수
- 7월 14일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유치 규탄집회
- 7월 15일 부안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1) <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http://cham-sori.net> 제공)>

- 7월 15일 부안읍 송모씨 분신자살 기도
- 7월 15일 곰소초등 변산중학교 등교거부
- 7월 18일 부안 공무원 직장협의회 핵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
- 7월 19일 부안 양성자 가속기 및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고문과 위원 4인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탈퇴
- 7월 19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협회 등 부안군 의료인 핵폐기장 반대
- 7월 21일 부안군의회, 부안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가결
- 7월 21일 오전 부안군 하서, 계화, 변산등 8개 지역농협 조합장 핵폐기장 반대
- 7월 21일 김형인 의장 폭행혐의로 부안군 계화면 농민회 회장 연행
- 7월 22일 대규모 1만인 투쟁, 체포영장 9명 발부, 부상자 80여명
- 7월 23일 오전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위원장, 탈퇴서 제출
- 7월 24일 산자부,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최종 발표
- 7월 24일 소관돈 200만원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성금
- 7월 25일 일만2천명 촛불시위 부안군 여성주민 8명 삭발
- 7월 25일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보고 발표
- 7월 26일 행자산자 장관, 대책위와 면담 거절, 위도방문
- 7월 29일 정부가 위도 현금 직접보상이 아닌 실질보상 입장 발표
- 7월 30일 부안군민, 청와대 상경 기자회견 7월 30일 문규현신부,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7월 30일 부안핵대책위,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 7월 31일 격포항 선박 200여척 해상시위
- 8월 1일 일주일째 매일 만명이상 모여 촛불시위
- 8월 3일 산자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및 부지선정위원회 명단 발표
- 8월 4일 경찰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 8월 5일 전북대책위 발족, 부안-전주 차량시위
- 8월 5일 부안핵대책위, '주민소환' 5만인서명운동 돌입
- 8월 6일 '외부세력에 의한 사퇴강요를 신고하라'-전북도 8월 7일 비민주적 행정 거부 이장단 290명(1차서명자) 사퇴(57.9%)
- 8월 7일 김종규 부안군수 소환서명운동본부 발족
- 8월 8일 범도민대책위 전북도의 '외부세력개입' 주장 사과 및 처벌 요구
- 8월 9일 15일째 - 1만 5천명 구속자 석방, 핵폐기장 철회 촛불문화제
- 8월 11일 전주,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범종교인 대회

8월 12일 위도발전협 지역발전 6개요구안 설명회  
 8월 13일 부안군 총파업투쟁 일만 2천명, 부안군민 8천여명 고속도로 점거  
 8월 15일 해대책위, 전북도경찰청 항의 철야농성 '난타시위'  
 8월 17일 경찰, 핵폐기장 백지화 차량시위 도중 군민연행  
 8월 17일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교사모임 발족  
 8월 19일 핵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입법청원 전북도민 1백만인 서명운동  
 8월 21일 선박 500여척의 격포항 2차 해상시위  
 8월 21일 위도주민 450여명이 핵폐기장 백지화 서명  
 8월 21일 서울,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발족  
 8월 22일 전북교사 510명 핵폐기장 건설 반대 선언  
 8월 23일 전주시청 앞 전북도민 1만인대회  
 8월 23일 전주도심 폭력진압 유혈사태, 53명 연행 8명 부상  
 8월 25일 학생학부모 5천명 모여 등교거부 선포식, 부안 초등학교 7개교 휴업  
 8월 26일 민주당 조사특위, 부안방문  
 8월 26일 전북도의원, 강현욱 퇴진 요구  
 8월 27일 반핵국민행동, 위도 지질 안정성 조사 중대 결함 발표  
 8월 27일 정부 부안군지원단 부안 방문  
 8월 28일 28일 행자부 장관, 부안해대책위 면담 - 대화기구구성 잠정합의  
 8월 29일 부안대책위 상임위원회 - 대화기구성 재확인  
 8월 30일 88.5%(휴업 13개교 포함) 등교거부  
 8월 30일 윤 교육부총리, 등교거부 부안주민들과 대화  
 9월 1일 도경찰청에 부안사태 관련 경찰폭력 민원 접수  
 9월 2일 대책위, 기만적 대화 거부 부안군 공무원 동참 천명  
 9월 2일 2박3일의 군청앞 천막농성 돌입  
 9월 3일 부안 등교거부 확산, 학생학부모 300여명 국회 상경  
 9월 4일 초등학생 300여명 청와대에 편지 전달  
 9월 4일 핵폐기장 백지화 염원 삼보일배  
 9월 5일 등교거부 학생 학부모들의 반핵민주학교  
 9월 5일 등교거부 초 86.7% 중 80.5% 고86.5%  
 9월 8일 부안군민, 김군수 내소사 폭행  
 9월 8일 한밤중 항의시위 도중 주민 부상 및 연행  
 9월 9일 경찰, 부안수협앞 무대 철거, 부안 7천명 전경 배치  
 9월 10일 1천여명 병력동원 대낮 현수막 철거

9월 10일 밤 촛불시위 부안군민 부상 8명  
 9월 11일 한가위 풍요 기원한 부안군민 한마당  
 9월 15일 부안 학생학부모, 무기한 등교거부 재결의  
 9월 15일 전북 지역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철회 촉구 선언  
 9월 17일 핵폐기장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9월 17일 부안사태 관련 지역언론문제 토론회  
 9월 19일 민주노동당 도지부 핵폐기장 백지화 100인 선언  
 9월 21일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 58일째, 등교거부 28일째  
 9월 23일 도대책위, 산자부 장관 퇴진 결의대회  
 9월 24일 등교거부 한달째, 교사들 국회 청와대 상경면담  
 10월 1-10일 삼보일배  
 10월 4일 등교거부 철회  
 10월 4일 정부 부안대책위, 대화기구 합의

...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대화진행중

11월 2일 촛불시위 100일째

부안문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반인권행위 그 자체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반민주 반인권 상황의 총체적 모습을 부안핵폐기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주었고 정부는 돈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하는 반인권적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공권력(사실상의 반인권적인 폭력행위)을 가장한 행위로 지역주민들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 평화, 그리고 국가기구의 반인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평화권 운동1)

### 평화권모임

#### ○ 취지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다.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 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의 노동사목회관에서 '전쟁과 인권'이란 주제의 포럼을 진행했다. 모든 인권과 생명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는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진행된 포럼은 무기력과 참담함으로 가라앉았고, 이후 인권단체들은 평화를 인권운동의 일부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 경과

3월 20일 미국, 이라크 침략 개시

3월 20일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 대회 준비모임 주최, '전쟁과 인권' 포럼 개최 (가톨릭 노동사목회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규탄 집회 열려

3월 20일 ~ 각 부문 운동 단체들이 망라된 '전쟁 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을 중심으로,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밝히는 집회, 성명 발표등 각종 행동이 4월까지 이어짐.

3월 25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 중인 국제인권단체들,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 채택하고 서명운동 전

1) 이 글은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평화권 모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인권단체들 역시 올해 평화권과 관련해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테지만, 여기서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개. 국내 인권단체들도 이에 동참.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3월 27일 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하며 정부에 전쟁지지 선언 및 국회에 상정한 파병 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4월 2일 국회, 이라크전에 한국군 파병을 결정

4월 3일 각계,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열어 이라크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한반도 평화 보장 재차 촉구

4월 4일 인권단체, 평화권 관련 준비 모임  
⇒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 각종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 고발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함.  
(<http://peacenet.jinbo.net>)

4월 10일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1차 회의  
⇒ 미국의 전쟁 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는 소책자 발간을 위한 준비 작업 시작

4월 12일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회 촉구 지구적 행동의 날 집회 열려

5월 ~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 미국의 전쟁 범죄 소책자 발간작업과 더불어, 평화권에 관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

- ①평화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
- ②무장한 세계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
- ③여성주의와 평화
- ④평화운동과 시민 불복종
- ⑤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7월 18일 평화권 모임,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소책자 발간
- 7월 22일 평화권모임, 이라크 지원 민중연대 초청으로 한국에 온 이라크인 수하드 압둘카림 씨와의 이야기 마당(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 9월 4일 미국, 한국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
- 9월 23일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시국회의> 개최 (서울 프레스센터)
- 9월 27일/ 10월 11일 :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미국의 파병압력 반대·전투병 파병 반대를 요구하며 집회 개최
- 10월 8일 인권단체,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함께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토론마당

# 인권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한다

### 둘째날

9:00~12:00 토론마당(주제별 워크샵)

- ① 인권·과거청산·공소시효 주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 ②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주최: 다름으로 닮은 연대
- ③ 동성애바로알기 주최: 한국동성애자연합
- ④ 차별과 인권 주최: 국가인권위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워크샵팀
- ⑤ 반세계화와 인권 주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7:00~10:00 토론마당(주제별 워크샵)

- ① 장애인이동권과 인권 주최: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② 치료감호와 인권 주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③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주최: 새사회연대
- ④ 평화와 인권 주최: 평화권 모임
- ⑤ 군대와 인권 주최: 군가협
- ⑥ 정보인권 주최: 진보네트워크 센터
- ⑦ 인권교육의 어제,오늘, 내일 주최: 인권교육네트워크

## 민간인 학살 문제와 국가적 책무1)

이창수 (새사회연대 운영위원,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특별법쟁취위원장)

### 1. 과거로부터의 성찰 : 국가의 현재성

우리 사회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제도적·정치적 유제(遺題)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가치 지향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즉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고 또 한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과 정당한 사회구성체(just social formation)의 형성 여부이다.

많은 사회에서 반민주·반민중적인 억압제도를 폐지하고 독재와 독점을 해체해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 투쟁을 벌여 나갔다. 우리 사회는 외견상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겪어 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의식적 노력이 수반되었다기보다는 청산될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가 지속되거나 청산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정치지형에 속해 있다.

특히 3년 전쟁(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가 또는 당시 정권이 자국민/민간인에게 자행한 총체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억압(gross or/and wide or/and systematic repression against its own people or civilians) 문제를 유족들 개인의 문제(individual affairs) 또는 과거의 것(the old)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행기적 정의는 더 이상 없다. 즉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유린 사태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의를 봉쇄하거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이행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전 정권(또는 외세)이 자국민에 대해 저질렀던 사법의 살인, 집단학살, 실종, 강간,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로

1) 이 글은 2003년 10월 18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교조여수지부가 공동주관한 여순사건 55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정치세력(political realism)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과거의 문제는 버려야 할 것으로 쉽게 간주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도 정의의 구현도 실현되지 못해 왔다.

이런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족과 일부 양심세력의 투쟁은 정치적인 타협에 종속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을 통해서 형성된 이행기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이행으로 나아가는데 현실노선을 채택했고 민주주의 이행 기간(1993년 ~ 2003년) 동안 이행기적 정의인 유제 청산을 위한 사법적 처벌이나 재판(judicial punishment or trials)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오류를 범했다. 역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 세력이 개혁과 청산의 과제를 멈추고 현실과 어쭙잡은 타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기적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과거를 청산할 기구/제도/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총체적인 민중억압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체할 만한 민주적·민중적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세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기 국민을 살해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화하던, 청산되어야 할 정권이 이끌었던 국가와, 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도 과거 정권이 자행했거나 독재자가 이끌었던 국가가 저질렀던 잘못(wrongs)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미래라는 허구로 덮어두려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이끄는 현재의 국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가가 독자적인 이성을 갖고 사회 제 세력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막스 베버적인 국가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오직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 만이 국가를 대신하는 상황이 과연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또 과거의 문제를 현재와 미래와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단정하고 나가자는 정치적인 선언 또는 논리가 과연 민주주의적인 이행과정을 겪는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우리 사회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인 학살이 대한민국의 출생 비밀'(김동춘, "전쟁과 사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야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이런 야만을 야만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 즉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정치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중에게, 적어도 생명권을 무자비하게 박탈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거나 기억해 내려고 하고 또 다시 이런 기억이 없어야 할 것을 의식하는 집단에게는 더 이상의 국가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

## 2.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의 제 차원

3년 전쟁 기간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현재진행형의 문제인 까닭은 그 성격이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정지하고 정치적인 힘으로 정리되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문제로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유족의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 해결방법이 더디거나 요원하다.

우리는 여기서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의 성격을 좀더 규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는 국가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국가의 이성을 작동시킬 것이냐의 방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에는 '피해시점'과 '해결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시점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기 즉 법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면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학살'이 자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 당시에 그 피해에 대한 구제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법적 정의—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거창 신원면 학살 사건 이외에 가해 행위시에 가해자의 사법적인 처벌이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진 것을 예를 들 것이다. 따라서 즉 이른바 '순수한 양민'이라고 일컬어는 비정치적인 이유에서 자행된 예에서는 광범위성은 인정되지만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합평 학살 사건이나 문경 석달마을 사건 같은 것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뒤의 두 사건은 사법적 정의가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어 당시 정권 또는 정치세력의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비정치적인 피해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좌익관련 인사와 그 가족 또는 과거에 좌익 관련 활동을 했거나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인사들에 대한 암살, 학살 또는 절멸 사건들과 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학살하는 행위는 국가를 빙자해서 독재 정권이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나 왜곡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국가 형성을 위한 시도를 포함하여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기회는 물론 실제적 참여를 거부/봉쇄 당한 정치적인 배제로 인해 생명권 등의 총체적인 박탈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3년전쟁 전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 정치적인 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동기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에 학살시점은 절대적인 해결시점이 될 수 없다.

둘째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가해자로 추정되거나 또는 적어도 그 가해사실을 방조/묵인/무지했던 국가에게 그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부여하지 못하고 '죄없이 학살당했음'을 피해자 가족 등이 입증해야 했다. 따라서

		사법적 정의 실현 여부	가해자가 속한 정치세력(/국가)의 피해집단에 대한 태도
학살 시점	비정치 학살	부분적 실현	명목상 국민 인정
	정치적 학살	무시	정치적 배제/절멸
해결 시점	정치적 차원	무시/타협/실현	온전한 국민으로 수용/ 온정적 국민으로 인정(비정치적 학살만 인정하거나 진상규명등 없는 명예회복의 경우)/ 사실상 배제 지속
	법적 차원	부작위/특별법 제정	국민 통합(정치적 학살 포함)/ 배제와 수용(비정치적 학살만 개별특별법 제정)/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학살에 가까운 사건일수록 그 증언과 증거의 확보가 어렵

고 오히려 관련 증거가 조직적으로 폐기·은폐·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그것이 실제로 정치적인 유의미성이 있었는지 아니든지 간에—로 학살당한 사건들의 경우 국가 또는 가해자 또는 가해집단으로 추정되는 측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거나 학살이 아닌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학살당한 실재는 있는데 증거가 없어, 따라서 학살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다.

셋째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안정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통합성과 미래지향성을 함께 갖고 있다. 미래의 사회와 정부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맥락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학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화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역사적 진상과 사회적 화해라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면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폭력혁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현실성이 아주 낮다.

넷째 학살 문제의 해결은 그 과정에 무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즉 과거의 가해자/가해집단이나 피해자/피해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형에서 학살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해결의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해와 피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결국 진상규명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현재 은폐된 진실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집단 또는 가해집단의 한정된 접근성은 그 실체에 사회적인 승인을 내릴 수 없다.

다섯째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인 학살 문제는 현재의 가해자에 호혜적인 비대칭적인 사회관계를 극복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한 대칭적인 처벌 또는 징벌적 진상의 규명은 법치적인 정의가 작동될 때 가능한데,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해 사실이 입증되어도 민형사상의 시효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칭적인 상호주의가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해자에 과도하게 호혜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청산을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조건이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기도 하다. 가해자 집단을 어떤 식으로든 대칭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정치적·현실적·법적인 문제를 들어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당화되는 상황 극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보일 수가 없다.

### 3. 민간인 학살·법제정·민중과 시민사회

우리는 위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단순히 유족과 그 피해 친인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의 학살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청산할 과거가 존재하며 그것은 학살 당사자와 피학살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가운데에서 국가 또는 피해자/피해집단의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가해자/가해집단에 호혜적인 정치 지형의 변경이 바로 법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또는 정치적 과제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을 진실의 실체로 파악하는가라는 문제만큼 중요하다. 즉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탈리오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에 승인한 비대칭적인(asymmetric) 상호주의에 입각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거청산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지점이 된다.

적어도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칭적·일대일 상호주의(symmetric reciprocity)에 입각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집단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법제정 국면에서 보면 우리의 유제해결은 정치적인 고려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논리적으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가해집단에 대한 대칭적 처벌을 넘어 보복적인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즉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 집단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 또는 억지력 확보가 가능하고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이는 현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혁명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국민적 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상황은 추정 가해자 등에 호혜적이고 피해자 등에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단계 과거 청산의 논리는 일치될 수 없는 두 세력 —현상 유지세력과 현상 타개세력—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과거청산은 정치적인 고려 등 정의에 속하지 않은 요소를 인정하는 비대칭적인 청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산을 승인할 때 비대칭적인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의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잠재적인 혁명상황이 지속되기

나 일부 피해 집단의 국민성을 배제하는 이상한 국가의 존재가 계속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상 규명과 사회적 통합을 현재의 과제로 승인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타협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와 피해 또는 현상유지와 현상타개라는 두 세력간의 정치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치적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진실에 대한 공정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법제도의 도입 즉 '(가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를 공식화하는 일이다.

현단계에서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 민간인 학살 문제의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일은 결국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갖고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승인(publicly and officially acknowledgement)'이라는 '진실에 대한 접근'(access to the truth)을 완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 또는 가해집단 그리고 국가의 관련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 정의(justice)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이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가책임성 인정	공정한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위원회 설치(법제화)	진상규명 작업	가해자 책임 면제(국민적 통합) 학살의 공개적·공식적 승인(민주발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조치(국민통합 및 민주발전)
---------------------	-----------------------------	---------	---	--------------------------------

#### <정치적 한계 상황에서 진상규명 개념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legal liability)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한계 지형에서 국가는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여기에서 가해자(perpetrators)와 피해자(victims) 사이의 정의 또는 사회적·집단적인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사면'의 문제이다. 즉 진실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고 전제했다.

물론 이런 전제는 이른바 체제와 관련된 민중 봉기 과정의 학살사건도 정당한 법집행이 아닌 이상 진상규명의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정당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의 현재성은 피해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차원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최소한의 법치국가적 요소인 "국민의 인권수호자로서의 국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의 접근, 정의의 실현"마저 부정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제약상태를 인정한 "진실에 기초한(즉 정의 실현을 유보한) 국민 통합과 민주 발전의 실현"이라는 비대칭적인 청산 모델이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국가책무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 즉 적어도 민간인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국민에서 배제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국가의 책임)를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는데는 다분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국가에 대응지점에 있는 시민사회 또는 민중들이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회인 현재의 상황은, 아니면 여전히 배제와 수용(일부 학살관련 특별법으로 제정을 통해)이라는 이중적인 국가행위가 지속되는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의의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사회이자 사실상 우익 정치세력이 국가의 대표성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이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없는 야만적 사회라는 맥락에서 보면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공적 영역을 대신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 영역의 국가인식과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행기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거나 이행기적 과제를 청산하기 위한 의도된 제도적 개혁이 부족했다. 따라서 다시 역사적인 반동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시민사회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공공적인 숙고(public deliberation)를 거치지 않아 이행기적 발전과정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정치의 은혜로 해결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의 이행기적 정의와 관련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제기(법제정 농성,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하거나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구상(예, 통합법안 제출)하고 집행(예, 민간인 학살 실태조사 등)하고 감시(국회 활동 감시 및 입법 촉구)하고 조직화(유족회 결성 및 각종집회)하고 성찰(각종 토론회의 개최)해 왔다. 하지만 이 영역은 법적 책임이 없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점으로 인해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정되어 있었다. 이 영역의 확대는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 등은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은 크게 △ 반정치권 모델(→ 정치개혁 과제 도출) △ 조직 모델(→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가해자에 대한 직접 보복 등) △ 공공영역 모델(→ 민주적인 국가 역할을 위한 여론 형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서술을 줄인다.

#### 4. 법제정과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형식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이행기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유제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책임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때는 국가의 존재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회의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과소하게 취급된 과거 청산이 제도적으로 확보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예, 학살 추정 집단)에 호혜적이고 반대로 일부 국민(피학살 유족들)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이등국민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극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제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실현할 이의 완성이 될 수 없는 여러 조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책무가 사실상 정지된 영역에서의 민중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왜곡된 대표성이 왜곡된 정치적 제한 상태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인 청산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유보/면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조치등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이행기적 정의를 이행해야 한다.

##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 역할극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해보기

장애여성은 가정에서, 지하철에서, 시설에서, 거리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화된 폭력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현실은 이 사회의 약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너무나 특수하거나 사소한 문제라서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채 매일 매일 묻혀집니다. 가정에선 어떨까요? 가정에서 장애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아버지, 남편, 형제자매, 자식, 손자까지 다양하지만 그녀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회구조속에 있습니다. "정상"신체를 가졌다는 비장애인들중심적인 사회에서 그녀들의 이동권을 빼앗고 노동권을 빼앗고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다름으로 많은 여성연대에서는 그동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떤이에게는 생존이 걸린 이러한 문제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특수한 문제라서 시혜를 베풀어야 할 차원의 문제인지,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문제라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인지는, 아니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수자와 주류 등의 여러 구도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정상성이라는 기준을 문제삼아야 할지 고민해보았으면합니다. 소수자의 문제는 세계를 다르게 이해하도록 이끍니다. 손쉬운 머리로의 이해를 접어놓고 역할극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서로 느껴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동성애자연합 사무국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 0. '동성애 바로 알기' 가 굳이 필요한 상황

- 장국영, 육우당의 죽음을 둘러싼 무수한 말들 (왜곡되거나 묻혀지거나)
-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일관적 접근)
- 에이즈의 주범, 동성'연애'자, '치료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질서'의 파괴자 등의 동성애혐오증
- 이반 전체의 문제로 묶일 수 없는 여성 이반의 또 다른 경험들
- 쉽게 저지르는 대상화 (Ex.'불쌍한 사람들이니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지,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되지.')
- 쉽게 저지르는 이상화 (Ex.'레즈비언들은 좋겠다. 남자랑 연애하거나 결혼 고민하면서 겪는 남성중심주의로부터 물러서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레즈비언하고 싶어.')
- 인권 운동 진영으로부터의 소외. 계속되는 무관심.

### 1. 동성애 관련 개념 정리

- 동성애
- 동성애자
- 호모(homo)
- 레즈비언(lesbian)
- 게이(gay)

-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이반
- 퀴어(queer)

## 2. "너는 어쩌다 동성애자가 되었니?": 동성애의 원인 찾기?!

- 본질주의적 접근 방식: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 된 것이다.  
(전두엽 절제 수술, 전기 쇼크, 등등으로 치료 가능하다.)
- 사회구성론적 접근 방식: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이들이 동성애자로 자란다.)
- 원인을 알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 3. "동성'연애'자의 현황, 분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떻게 동성'연애'자가 되셨습니까?", "동성'연애'자와 동성애자는 어떻게 다른가요?"...등등

## 4. 커밍아웃coming out of the closet/아웃팅outing

- 커밍아웃: 나 자신에게 하는 커밍아웃,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커밍아웃.  
(시기, 방법, 준비)

"커밍아웃을 왜 하나요?",

"커밍아웃을 왜 하지 않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기도 한데...어쨌든 억울하군."

(커밍아웃 이전과 이후)

- 아웃팅: 스스로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 성적체성 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역시 아웃팅이다. 아웃팅은 폭력이고 범죄이다.

## 5.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혐오증)

- 개인 차원 (내 안의 호모포비아, 네 안의 호모포비아)
- 역사 차원 (원손잡이/노예제/금발애자/불입자 등. 결국은 '차이'의 문제.)
- 제도 차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법, 청소년보호법, 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회문화 차원 ("한국은 레즈비언의 천국", "우리나라 좋은나라" 등)

## 6. 생애주기별

- 청소년기 ("어린 것들이 뭘 알아.")
- 이십대 초반
- (소위) 결혼 적령기
- 결혼 제도 안에서 (끼리끼리로 들어오는 기혼 여성 상담들)
- 노년기

## 7. '여성', '성소수자', '단체' 인 끼리끼리가 부딪치는 어려움들

- 활동 인력의 만성적 부족
- 재정 부족
- 등등

## 8. 한국동성애자연합 소개

한국동성애자연합 <http://www.lgbt.or.kr>

TEL : (02)703-3542

FAX : (02)703-3543

E-mail : [admin@lgbt.or.kr](mailto:admin@lgbt.or.kr)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 모임 <러브포윈>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워크샵팀  
 (동성애자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 꿈너머/평화인권연대)

노무현 정부가 학력,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5대 차별영역에서 차별해소를 약속한 가운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18대 차별영역<sup>1)</sup>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아직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지 못하다. 다만 장애인운동진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구성해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를 모으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한 가운데,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워크샵>은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시민사회에 환기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의 간담회를 시킨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차별의 정의, 기제, 영역, 원인 등을 다시 재고해 보고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반 차별운동 영역의 연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모색해보았다. 여기서는 간담회를 통해 얻은 성과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해보고자 한다.<sup>2)</sup>또한 인권운동 진영에서 차별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 1) <워크샵>은 인권위법 18대 차별유형을 최초 신체적, 인종적, 양심·사상적, 사회적 신분, 과거경력 다섯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신체적 속성에는 성별, 장애 등이 인종적 속성에는 성지향, 인종, 피부색 등이 양심에 따른 속성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사회적 신분에는 출신지역, 혼인여부, 임신·출산 등이 포함될 것이고, 과거경력에는 병력, 학력등이 포함된다고 보았음. 하지만 성지향이란 문제는 선, 후천성 문제를 따질 수 없고 평생을 걸쳐 경험, 정치적 이유, 자발적 선택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적 속성보다 양심, 사상에 따른 차별로 구분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됨
- 2) 조순경 교수의 '차별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등의 논문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차별'에 관한 총론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차별의 새로운 개념에 있어 조순경 교수의 논문과 간담회 내용을 많이 반영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차별과 차별금지법

### - 차별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일반적 차별의 정의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지역, 출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性的지향 病歷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차별'에 해당될 것이다. 일례로 영업사원을 관리직 사원으로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하는 것은 관리직 사원의 자격기준과는 무관하고 결국 이 상황에서 성지향에 의한 구분은 본질적으로 필요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크샵>이 여성과 차별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도성있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간접차별<sup>3)</sup>이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고, 현재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간접차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조순경 교수는 간접차별이라는 부분이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수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

### - 차별의 범위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

또한 차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성적, 입사조건 등 객관적인 상황이 일치한 여성 A, B가 동시에 면접을 보았는데, 외모에 있어 더 예쁜 A가 고용되었다고 하자. 물론 B입장에서 명백히 외모라는 신체적 속성의 차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B는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인정해버렸다. 이것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 실제 차별의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 본인들이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 상황과 같이 개인의 선호가 상습화되어 보편화, 표준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배려의 차원으로 접근된다면, 약

3) 미국의 간접차별 이론을 '불평등 효과이론'이라고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관행이나 제도 등이 결과적으로 특정집단에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경우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는 언제나 선처를 바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생각할 것이 우리의 경우는 미국, 독일과 다르게, 차별심사기준이나 주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차별로 느낀다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차별 영역<sup>4)</sup>을 한국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차별영역은 미국의 차별금지법을 베껴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는 맞지 않는 듯 하다. 특히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는 더하다 상기 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현재 실질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차별적 인사나 매체의 왜곡 보도 등)과는 거리가 있다. 장추련 역시 장애인이 차별받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적 영역안에서도 차별받고 있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 -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를 수 있는 권리)

세계인권선언 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소수자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이 사회 주류(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등)의 문화와 '다르다'라는 기본전제 속에서 차별을 경험한 직접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이라는 범주에 무수히 많은 '다름'을 모두 포함해 뭉뚱그려 가기에는 억지스러운 것은 아닌가? 오히려, 다름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점은 각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였다. 미국의 켄지요시노 교수 역시 「커버링」을 통해 차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은 드러내기를 초점으로 맞추다보니 여성과 인종문제와는 다르게 성소수자들은 소외된다고 하며 차별받는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차별간극'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차별로 나타나는 양상의 단계를 1. 전향하라 2. 아닌척 하라 3. 떠벌리지 말라로 보았다.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3단계 차별까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차별문제는 '비교대상'이 존재해 판단하기 쉬운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비교대상이 없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업종 전체를 여성으로 고용했을 때 기존의 기준으로는 차별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이 가진 고유속성에 기반한 권리개념, 보장까지 요구되고 있다.

4) 인권위법 제30조2항에 차별영역을 세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 / 재화·용역·교통시설 등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행정적인 관심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구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파견법을 어겼을 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차별의 충동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몇가지 예를 들겠다. 일본의 경우 '장애태아를 낙태하면 차별이다'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도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목적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노동유연화가 선택의 조건을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HIV감염인 부모가 아이를 낳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감염인 한 명이 늘었다는 윤리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시키는 논의의 바탕에는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위원회 내부에 설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바 없지만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위원회 내부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화시키고 차별영역은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두어 차별영역별 소위원회에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담회에서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부를 강화하고 남녀차별금지법 등 기존 법안을 개정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차별문제의 경우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일임하고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또한 각 영역별 독자적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차별시정위원회는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가? 아예 차별전문법원을 두어 한국식에 맞는 차별판단기준으로 좀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반차별운동의 연대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유를 추측해 보는데, 기대를 걸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대이하의 역할만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여성<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여성부를 강화하고, 기존의 여성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장애인 <장추련>의 경우 독자적인 법안을 이미 추진 중이고, 성소수자<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경우는 독자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준비자체가 회의적이고 포괄적인 법 테두리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공통의 의견을 모은 것은 노무현 정부가 법안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요구가 포함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다. 법안에 있어서도 실효성 부분을 떠나 반차별교육(인권교육)과 적극적시정조치의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입증책임전환제도 등 처벌적 차별시정조치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의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입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리 점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워크샵>은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반차별 운동간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차별의 원인에 있어 다양하게 판단하고, 같은 영역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 영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그동안의 인권운동이 '인간'이라는 단일한 보편성에 근거해서 평등을 추구하고, 그 결과 '인간' 내부에 서로 환원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사고가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반차별운동의 연대적인 측면에서도 단지 소수자운동에 그쳐 사고할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 자체의 전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미 국가기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실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실효성을 바탕으로 수 있게 반차별운동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반세계화<sup>1)</sup> 운동의 다양한 전략과 쟁점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 1. 도입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추구를 위한 이데올로기, 정책, 다양한 조치들을 표현하는 말로써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지칭되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저항과 시위들,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세계사회포럼은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체제에 저항하고 사람다운 권리를 찾기 위한 많은 운동들은 이제 반-세계화라는 지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세계화 운동이 스스로의 전략과 목적을 단일하게 형성하지는 않았다. 유일한 슬로건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sup>2)</sup>'이다. 그럼에도 이 유일한 슬로건 하에서 다양한 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흐름으로 묶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동시에 이것은 그만큼 각각의 운동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지칭되는 다양한 운동들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전

- 1)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명칭은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론이 이 투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현재는 반-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세계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과 WTO, IM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또는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이윤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우선하는 민중적인 대안을 세계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직까지 운동진영 내부에서 통일된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유일한 슬로건이다. 세계사회포럼은 그동안의 반-세계화 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이 모여서 서로의 전망과 행동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반-세계화 운동의 대표적인 표상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회포럼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최대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의 행동과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의 다양성 또한 중요하게 보장하려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단일한 전략 또는 강령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기 세계사회포럼이 반-세계화 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이는 곧 반-세계화 운동이라 명명되는 거대한 흐름이 아직은 단일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세계 운동들이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운동들이 처해왔던 많은 문제와 딜레마,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해진 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 글은 반-세계화 운동의 출현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개괄을 담고 있다.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각각의 운동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화라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민중들의 삶과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려는 운동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반대하고 다른 세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하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운동에서도 반-세계화 투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반-세계화 운동이 국제적인 연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운동의 인식과 전망에서 현재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그 하에서 우리의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반-세계화 운동의 출현

### 2-1. 세계화, 전 지구적인 저항을 불러오다.

현재 통용되는 '세계화'라는 용어는 분명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에서 등장하였다. 9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금융영역에서의 변화, 특히 금융에게 부과되어있던 각종 규제와 장벽의 철폐는 이러한 세계화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을 위시한 자본시장의 영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사회 전반에 걸친 조정과 변화의 시도를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오늘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은 세계화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세계적인 비용 삭감의 노력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시간, 노동조건, 임금 등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자본의 유연화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기존에 공공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대

규모 '공기업'들을 민영화, 사유화하는 과정을 요구한다<sup>3)</sup>. 민영화, 사유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자유화, 탈규제 조치이다. 그 결과 자본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전 세계 도처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 WTO 등의 국제기구의 강화를 통해 제도적인 실행을 보장받았다. 1980년대 남미의 나라들이 겪었던 외채위기는 미국을 위시로 한 중심부 국가들에게도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였다. 이러한 외채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IMF의 구제금융을 통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그것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것이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또 다시 외채위기를 겪어야했으며, 외환위기 또는 외채위기라는 형태로 전 세계 곳곳으로 감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행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위에서 지적한 노동의 유연화와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자유화, 탈규제 조치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이 속에서 WTO 또는 자유무역지대, 양자간 협정과 같은 자유무역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세계화는 결코 한 국가 자체의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초민족 자본의 세계화이며, 그들의 발전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었다. 외자 유치 또는 기업들의 투자의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민중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건은 악화되었으며,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임금수준은 하락했고, 광범위한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이 일반화되었다. 농촌 지역의 소농들이나 원주민들은 거대 농산품 회사들에게 자신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 가야했다. 게다가 공기업의 민영화, 사유화는 민중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어려워진 가계의 상황은 공공 서비스가 사유화됨으로써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악영향은 여성들에게 더욱 집중되었다. 여성들은 가계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진출해야 했고, 공공 서비스의 해체로 가족에게 부과되는 보살핌의 노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부담에 내몰렸다. 이러한 세계화의 비참한 결과는 제3세계 민중들에게 더욱 극적으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만연하고,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지지만 할 뿐이었다. 세계화는 점점 제3세계 민중들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초민족적 기업들은 이제 '지적 재산권' 등의 이름으로 민중들의 전통적

3) 이 때 공기업을 공격하는 주된 논리는 '비효율성'이다. 지난 해 발전 파업 때도 많이 등장했던 이 논리는 국영부문 또는 공적인 영역은 이윤의 논리에 따르지 않으므로 관료적이고, 방만하여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적인 영역 또는 사기업은 이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란 논리가 성립한다.

인 지식과 생명, 자원에 대한 권리까지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화는 당연히도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민중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삶의 파괴에 맞서 저항을 시작했다.<sup>4)</sup> 하지만 이제 출현하는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은 새로운 쟁점과 이슈를 제기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은 제3세계 민중들에게 '철수'와 '도피'의 위협을 들이대고 있었다. 물론 계속되는 개방과 자유무역의 확대는 중심부 노동자들에게도 위협적인 것이었다. 중심부와 주변부 민중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세계화의 폐해들을 경험하며, 그것에 대한 저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들로 진행되던 투쟁이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며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이었다.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반대투쟁,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쥬빌리 2000 운동, 투기적인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운동 등이 등장했다. 이러한 각각의 운동들은 99년 시애틀 투쟁에서 '반-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으로 드러났다.

## 2-2. 반-세계화 운동의 전개

1999년 WTO 3차 각료회의의 개막식을 저지했던 시애틀 투쟁은 반-세계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시애틀 투쟁은 전 세계에서 모인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애틀 시내 중심부를 가득 메웠을 정도로 거대한 투쟁이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농민, 여성주의자, 환경주의자, 실업자들이 있었다. 시애틀뿐만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투쟁이 동시에 벌어졌다. 시애틀의 WTO 3차 각료회의는 2000년 '뉴라운드5'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반-세계화 시위대의 투쟁은 이 중요한 계기를 좌절시킨 것이다. 이 투쟁은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1999년 초부터 시애틀에서의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투쟁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모라토리엄 선언문'이 전 세계로 배포되었다. 이 선언문은 "자유무역체제가 민주주의, 인권, 노동권, 환경, 문화 등 인류 삶에 미친 영향에 대

4) 특히 남미에서 발생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중요한 사례들로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혁명, 콜롬비아의 게릴라, 에쿠아도르의 원주민운동과 그들이 결성한 정치정당, 브라질 노동자당과 무토지 농업노동자운동(MST), 우루과이 거대전선을 들 수 있다. 이 투쟁과 조직들은 7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있으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사회진보연대 통권34호, 2003년 4월호, 마르타 아르네케르, "당-좌파"와 "사회적 좌파"의 연합을 위하여 참조. 5)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포괄적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0년 도하에서 출범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상정된 WTO의 의제를 도하개발의제(DDA)라고 부른다.



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 평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뉴라운드 출범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호소문에는 전 세계 80개국의 133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동참했다. 물론 그 내부에 WTO를 둘러싼 투쟁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지금까지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집한 힘은 WTO 각료 회의의 개막식을 저지시켰고, WTO로 표상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시애틀 투쟁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의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국제기구의 회의와 선진국 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한 시위들이 이어졌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단순히 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로 그친 것은 아니었다. 투쟁을 위해 모인 전 세계 민중들은 그 장소에서 민중들의 포럼을 열고, 세계화의 폭력과 반민중성에 대해 폭로하고, 민중의 요구와 대안을 모색했다. 사실 시애틀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입장은 ‘WTO를 반대한다’는 것에서만 같았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WTO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WTO를 반대하는 각각의 이유는 각자 달랐다. 주변부 국가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세계화가 파괴하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이유였다면, 중심부 국가, 특히 미국의 노동운동은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WTO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미국노총인 AFL-CIO는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로 시애틀 투쟁에 참가했다. 중국의 수출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점차 극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련의 시위들과 함께 벌어진 포럼들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서로 토론하며 좁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포럼과 토론의 공간을 통해 각각의 운동들은 공통의 요구와 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일상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긴밀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물론 반-세계화 운동 내부에는 여전히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협소하게 자기만의 이해에 기반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다. 시애틀 투쟁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투쟁들은 세계화에 맞서는 전 세계 민중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교류와 소통, 운동들 간의 상호존중을 확대해온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새롭고도 주목받는 공간을 탄생시켰다.

6) 이창근,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 투쟁’의 흐름과 쟁점 - MAI에서 시애틀, 워싱턴까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홈페이지 antiwto.jinbo.net 자료실

7) 대표적인 예로 2000년 4월에 벌어진 IMF/세계은행 춘계회의를 계기로 벌어진 워싱턴 시위, 2000년 9월 IMF/IBRD의 연차총회를 하루 단축시켰던 체코 프라하의 투쟁, 2001년 7월 G8 정상회담에 맞서 20여만명의 군중이 모였던 이탈리아 제노바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 3. 반-세계화 투쟁의 현재 상황과 의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의 흐름은 현재 ‘세계사회포럼’으로 그 표상을 얻고있는 듯하다. 지난 2월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3회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에서 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여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렇다고 세계사회포럼이 그 규모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운동들 사이의 연대와 공동의 행동을 증진시키는 유의미한 공간이다. 반-세계화 운동의 향후 전망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의 반-세계화 운동의 상황과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세계사회포럼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 3-1. 세계사회포럼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세계사회포럼은 이전의 어떤 운동조직과도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계사회포럼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세계사회포럼 현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항상 다원주의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단체와 운동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활동의 다양성에도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 현장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젠더, 인종, 문화, 세대와 신체적 능력의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sup>8)</sup>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세계사회포럼의 이슈, 참가자들의 구성, 포럼의 운영 방식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운동들이 보여준 것과 다른 점은 이러한 다양성 존중이 포럼의 결집력을 분산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포럼을 더욱 확장시키고,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세계사회포럼은 기간 진행된 반-세계화 운동의 모든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sup>9)</sup>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구성에서도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에는 이전

8) 그러나 정당 대표 또는 군사 조직은 포럼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반면 세계사회포럼의 현장을 인정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정책고안자들은 개인자격으로 포럼에 초청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조항이 채택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자세한 것은 마르타 아르네케르의 위의 글을 참조.

9) 세계사회포럼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경로에 거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다. 참가하는 조직들은 자신들이 제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공간을 배정해준다. 국제위원회,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단지 포럼 준비 측은 그 해에 진행될 사회포럼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 커다란 틀에서의 범위만을 제시한다. 참고로 국제위원회가 제시한 인도에서 열릴 2004년 4회 사회포럼의 주제는 다

시기에 출현했던 모든 유형의 운동과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한 단체와 운동들이 이념적인 지향도 매우 폭이 넓은 뿐만 아니라, 운동의 형태들도 매우 다르다. 뿐만 아니라 지방-지역-국가-국제 등 참가 단위들의 기반도 다양하다. 또 한 가지, 세계사회포럼은 꼭 짜여진 조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새롭다.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가지려 하지 않고, 총괄적인 상부구조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sup>10)</sup>.

이러한 세계사회포럼은 그 내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기 반-세계화 운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반-세계화 운동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운동이다.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운동에게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그 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운동들이 채택하는 <호소문(Call for Mobilization)>을 들 수 있다. 1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브라질의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브라질노총(CUT), 이탈리아 제1노총(CGIL),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세계여성행진,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 주빌리2000과 같은 7개의 단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활동 목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 한 총회('사회운동국제총회'라는 명칭을 붙였다)가 성사되었고, 그 속에서 현 시기 반-세계화 운동들이 지향해야 하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담은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호소문>은 3회 세계사회포럼까지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매회 세계사회포럼을 둘러싼 정세에 따라 <호소문>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포럼 참여자들의 거대한 다양성—여성과 남성, 청년과 성인, 원주민과 농촌지역 사람들과 도시인, 노동자와 실업자, 노숙자, 퇴직자, 학생, 이민자, 신념과 피부색, 성적 지향의 차이—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바로 운동의 힘이고 통일성의 토대이다. 세계화가 강화하는 여성 차별적 가부장제, 인종차별, 종족학살, 생태파괴와 인민의 건강 및 생활 조건의 악화를 반대한다. 외채는 ‘탕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생태적인 착취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조세피난처를 폐지해야 한다. 자원과 공공재의 사유화, 노동기본권이 박탈, 자유무역과 FTAA에 의한 농민, 노동자,

음과 같다. 1>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2> 미디어, 정보, 지식과 문화, 3> 민주주의, 생태적·경제적 안보, 4> 지속 가능한 민주적 발전, 5> 노동의 세계와 생산·사회적 재생산에서의 노동, 6> 공공부문과 사회보장, 7> 소외, 차별, 존엄성, 권리, 평등, 8> 카스트, 인종, 출신에 의한 배제, 9> 종교, 문화 및 정체성, 10> 가부장제, 젠더, 섹슈얼리티.

10) 국제위원회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라기보다는 세계사회포럼의 성사를 위해 각 지역, 국가의 단체들이 결합하여 논의를 하는 위원회이다. 국제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권한을 가진다기보다 오히려 세계사회포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지방기업들의 주변화를 반대하고, 민주적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명에 대한 특허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군비경쟁과 무기거래, 국내문제에 관한 외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한다.”

이러한 <호소문>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세계화 속에서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의 목록을 새롭게 작성하려한다는 점이다. <호소문>은 반-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는 각각의 운동들이 함께 존중하고, 서로의 운동 속에서 확장시켜내야 할 권리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반-세계화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도로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대륙별, 지역별 포럼을 들 수 있다. 유럽사회포럼은 이미 대규모 반전 시위를 조직하면서 지역포럼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열린 아프리카사회포럼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지역포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사회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지역포럼들이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포럼은 비슷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운동들이 지역적인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운동들간의 상호 교류와 연대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하면서도 자기 지역의 이해에만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모색이 지역포럼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운동네트워크의 결성을 들 수 있다. 3회 세계사회포럼의 사회운동국제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더욱 근원적인 정치적 논쟁을 통해 전 세계 사회운동들의 교류를 향상하고, 연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사회포럼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고, 반-세계화 운동 내부의 전망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 3-2. 주요 의제들

현 시기 반-세계화 운동 속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의제들은 세계사회포럼의 형성의 계기가 된 것들이기도 하며, 세계사회포럼의 확장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사회운동들이 공통의 의제로 고민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다.

○ 국제금융·무역기구의 전화 : WTO나 IMF/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해체하거나 중립적인 기구<sup>11)</sup>로 전화하거나 내부의 개혁을 통해 활용하자는 제안들이다.<sup>12)</sup>

11) 예를 들어 IMF를 자본 유입과 환율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12) 반-세계화 투쟁의 대표적인 이슈인 WTO 반대 투쟁에 있어서도 운동세력들의 전략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TNI 연구소의 Dot Keet은 최근 「WTO 체제의 대안」이

○ 금융거래과세 : 민족적 정책수단, 국제적 회계수단을 통해 민족국가로의 자본 유입에 관한 통제를 회복하고 증진하자는 제안이다.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이 제안은 1998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ATTAC이라는 단체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단기적인 금융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제거하고,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민중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3세계 외채탕감 : 현재 제3세계 국가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외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제3세계가 깊어지고 있는 현재의 외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외채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부과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3세계 국가의 경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채는 제3세계 민중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외채를 갚기 위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외채 탕감의 문제의식은 점점 더 발전하여 요즘에는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착취, 제3세계 문화와 사회, 경제의 파괴를 자행한 것은 중심부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 농업개혁의 전환 :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그룹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 시장은 빈농과 소농을 말살하고, 식량의 통제권마저 민중에게서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토지에 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 물의 상품화와 사유화에 대한 반대(땀에 대한 반대)

라는 보고서에서 WTO를 둘러싼 여러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WTO의 제도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혁하자.
2. WTO의 규제와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정하자.
3. WTO의 포괄 범위와 권한을 더욱 확장하는 것에 저항하자.
4. WTO의 특정 협정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자.
5. WTO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영역을 보존하자.
6. WTO의 강제적 분쟁해결 권한을 개혁하거나 축소하거나 박탈하자.
7. WTO의 역할을 재구성하거나 급진적으로 재정의하거나 제한하자.
8. 새롭게 균형을 잡거나 새롭게 형성된 '지구적 통치성(global governance)'의 맥락에서 WTO의 위치를 다시 잡자.
9. 지금과는 다른 세계 체제의 변형의 맥락에서 WTO 전체를 제거하자.

○ 초민족기업에 대한 감시 : <기업책임성에 관한 기본협정> 창설을 통해 초민족기업에 관한 통제를 제안. 대안적이며, 소규모-지방적 기업의 연합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 전쟁 반대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사용되고 빈번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민중들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하는 모든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반대한다는 입장. 3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라크 전쟁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반-세계화 운동은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자신의 과제임을 명확히 했고, 실제 이라크 전쟁 발발 전부터 세계적인 캠페인과 직접행동을 벌여왔다. 앞으로 세계화가 점점 더 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지역적인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면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3. 한국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의 현황과 의미

한국에서도 반-세계화 투쟁에 대한 고민은 많이 진척되었다.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과 같이 일찍부터 초민족적 자본들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그를 위해 민중들의 삶의 권리는 축소하는 자유무역체계의 폐해를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들도 존재해왔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남미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점차 반-세계화 투쟁의 쟁점들이 형성되었다. IMF 외환위기 초기에 시행된 구조조정은 주로 대량해고를 동반하면서 '정리해고 저지'가 주된 투쟁의 쟁점이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관철되었고, 그러한 구조조정은 외국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 경제적 영역을 정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속에서 노동유연화, 민영화/사유화, 자유화, 탈규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에 맞선 투쟁은 종종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롯한 투쟁으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의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실상의 의미는 달랐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밀려왔고, 때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공명하기도 했다.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한 편에서는 수입개방을 저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가져온 농산물 수입개방의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커다란 문제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 쌀 시장 개방을 연기시켰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던 때에도 세계화

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한국의 운동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 WTO 뉴라운드 출범이 예견되면서 농업협상의 문제는 농민들에게 다시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지형은 우루과이라운드 때와는 달랐고, 농민들의 투쟁은 국가가 WTO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WTO 체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함께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운동들이 주목했었던 기존의 문제에 포괄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교육/의료 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설치, 불안정 노동의 증가 등.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과 같이 전혀 새로운 투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수용하게되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물론 활성화되는 국제적인 반-세계화 투쟁도 한국의 운동진영이 세계화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관점이 운동진영의 총체적인 관점으로 수립되지는 않은 것 같다. 여전히 각각의 사안들이 해당 부문의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체들을 형성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각각의 부문의 이해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종종 민중들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운동의 앞날을 전망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단지 세계화를 반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운동의 노선과 전망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운동진영들에게 많은 쟁점과 과제가 던져지고 있다. 전쟁의 문제, 노동의 유연화 문제, 자유무역정책의 문제, 복지의 해체 및 사유화의 문제, 금융시장의 자유화 문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운동진영 전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에서 새롭게 전망과 전략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을 사고함에 있어서 남겨져있는 과제일 것이다.

#### 4. 반-세계화 운동의 다양한 전략과 쟁점

반-세계화 운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사고하고 있지 못하지만 반-세계화 운동의 전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져있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반-세계화 운동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자.

#### 4-1. '어떻게'의 문제

반-세계화를 위한 요구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방식을 두고 형성되는 쟁점을 들 수 있다. 반-세계화 운동 내부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노력은 세계사회포럼의 <호소문>과 같이 운동들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작성하려는 성과들을 낳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가 미비한 지점은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자면, 체제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가자는 것과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에 기반한 급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런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세계화 운동 내부의 많은 제안들이 체제 내에서 제도를 변화시키며 변혁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존에 개량주의라 불리던 것으로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런 제안들은 체제 내/외부라는 구분에 신경을 쓰기보다 현재 투쟁해야 할 대상과 민중들의 보편적인 요구에 더욱 중심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제안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고, 민중들의 투쟁에 따라 어떻게 발전할지 아직 점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혁명적이나 개량주의냐'가 아니다. 반-세계화 운동의 다양한 제안들이 계속해서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느냐가 진정한 문제이다. 전 세계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제안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대중들의 투쟁이 확장되고 급진화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4-2. 자율성의 확보 문제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보장받을 것이냐의 문제도 쟁점이다. 주로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이 정당들의 갈라짐을 따라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정치를 매개로 하는 정당들의 대립은 분명한 노선의 차이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종 이데올로기적 선전이나 이미지에 기댄 것이다. 게다가 선거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분할하려는 경향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운동들이 정당운동에 대해 일정한 거리감을 두며, 정당의 대립을 따라 분열하는 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공동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회운동들 내부의 상호 존중과 교통의 노력 속에 전 민중의 보편적인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노선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으나, 위에서 이미 서술한 것도 있고, 미처 담지 못한 것